KCMI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6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마.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마.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바. 증권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사.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라.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자본시장연구원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공개 시 사전수요예측제도 근거 마련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6/5/12 개정 · 2026/11/13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공개 시 사전수요예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 · 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

—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

-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

— IPO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 · 장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을 허용

2) 주요 내용

□ 사전수요예측제도(제119조의3 신설)

—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시장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존)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의 권유를 제한하고 있어,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희망 가격·수량 등 수요를 파악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었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동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여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

• 주관사는 초기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되므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제119조의4 신설)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을 허용

• (개정) 사전수요예측과 유사하게 증권신고서 제출 전 청약의 권유, 승낙을 제한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의 사전 확보를 통해 해당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의 형성을 돕고, 상장 후 짧은 기간 동안 공모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시켜 건전한 IPO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관리(제119조의5 신설)

—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5/26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 전면 폐지를 위함

—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개선방안(2026.2.25.)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전면 폐지(제384조 제8항)

—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조사·조치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을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까지)하여 지급'하는 명료한 방식으로 개선

-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여 다른 기관에 신고·접수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하여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가담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으나,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내부정보 보유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
- 포상금은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납입'(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 등으로 제재 이후 과징금 등의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과징금 부과'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 일부(10%, 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5/26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제33조 제1항)

—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10억원)을 폐지

— 부정행위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등의 기준 변경(별표 1 제1호 후단)

—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 장기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등을 할 때 위반행위의 계속성을 고려하도록 함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 산정 범위 확대(별표 1 제2호 나목)

—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 (기존)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는 않았다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 (개정)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와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적용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 변경)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외부감사 · 내부감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사유 및 별도조치 기준 보완)
다.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포상금의 산정 기준금액, 포상 시기 등 개선)
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 및 포상금 산정 세부기준 변경)
마.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주기 및 지정 회사 수 확대)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26/5/27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내부감사, 외부감사 방해행위 처벌 강화(별표 7 제3호)

—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방해행위를 제재 가중사유로 추가

-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열람, 복사,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별표 7 제5호)

—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 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과징금 상향(별표 8 제2호)

— 의도적 회계정보 은폐 · 조작, 자료 위변조 등을 통한 재무제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6/5/27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외부감사 방해행위,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 거부 등에 대한 가중사유를 신설하였으므로 시행세칙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부감사 · 내부감사 방해 등을 이유로 한 가중사유 보완(별표 1 Ⅵ.2.가.)

— 외감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여 외부 및 내부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조치 가중사유 신설

□ 외부감사 · 내부감사 방해 등에 대한 별도조치 기준 보완(별표 1 Ⅴ.6.)

— 외부 · 내부감사 방해 등을 감리방해와 동일하게 고의(2단계)로 별도 조치하도록 조치기준 신설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2025.8.27. 금융위·금감원 발표)에서 외부·내부감사 방해 등을 감리방해와 동일하게 고의(2단계)로 별도 조치하기로 하여, 시행세칙에 조치양정기준을 신설

□ 다수 과실 위반에 대한 제재를 조치기준에 신설(별표1 Ⅴ.9.)

— 외감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여 다수 과실 위반사항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치를 추가

- 외감규정 개정안은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의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 제재조치를 신설(2026.5.27.)하였으므로 시행세칙에 이를 반영
-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1~3년)

□ K-IFRS 제1118호 시행에 따른 양정기준 개정(별표 1 Ⅳ.1.나.)

— K-IFRS 제1118호에 따라 주석 공시한 영업손익의 경우 B유형을 적용하도록 개정

- K-IFRS 제1118호 시행(2027.1.1.)에 따라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주석'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 위치가 주석으로 변경되더라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현행 회계기준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양정기준(B유형)을 적용할 필요
-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위치 변경으로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을 보완(2025.12.19., 금융위 보도자료)

□ 의견제출 방법에 대한 시행세칙 정비(제40조 제3항)

— 행정절차법과 동일하게 서면, 구두,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

•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견제출 방법을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

다.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026/5/26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변경(제2조 제2호)

— (기존) 포상금 지급한도는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총액(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과징금 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도로 함

□ 포상의 시기 개선(제6조의2 신설)

— 포상은 다음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때 실시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로 보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 1.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에 대해 포상을 실시

• 2.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전부납입 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

□ 부처 간 칸막이 해소(제5조)

—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 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

□ 평가 · 환류체계 마련(제9조의2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함

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 신고 등에 관한 규정 (2026/5/26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의 세부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제34조 제4항 신설, 제42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몰수 · 추징된 재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몰수 · 추징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제38조 제5호)

—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닌 한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제39조 제1항, 별표 1)

— (기존)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 또는 몰수 · 추징된 금액의 30%)

— (개정)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제39조의2 신설,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2항)

—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결정시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원)을 먼저 지급

—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되고 관련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차액을 지급

마.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2026/5/13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정 주기 및 지정 회사 수 확대(제9조)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강화를 위해 지정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보다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수를 기존 8개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부실기업 퇴출제도 개선)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준 및 절차 정비)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투자경고 지정 및 지정예고 대상 확대)
마.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정비)
바. 증권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가격변동성 측정 방식 및 거래증거금률 산정 방식 변경)
사.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전문평가 절차 명확화 및 평가기관의 법령 위반 책임 부여)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6/5/13 개정 · 2026/7/1 시행)

1) 개정 이유

□ '부실기업 신속 ·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부실기업 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부칙 제4조, 제48조 제1항 제9호)

— 상향조정 계획을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하고, 일시적인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도록 세부 산정기준 개정

- (기존) 관리종목(30거래일 연속 기준 하회) 지정 후 90일 동안 '연속 10일'(+누적 30일) 기준 상회시 상장폐지되지 않고 복귀
- (개정)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연속 45일'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2026년 1월	2026년 7월	2027년 1월	2028년 1월
기존 계획	200억원	-	200 → 300억원	300 → 500억원
조기화	-	**200 → 300억원**	**300 → 500억원**	-

□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제47조 제1항 제9호의2, 제48조 제1항 제9호의2)

— 보통주식의 종가 1,000원 미만을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요건 충족 방식은 시가총액 미달 기준과 동일(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90일 이내에 '연속 45일'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30일 연속 종가 1,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가 있었던 경우 상장폐지

— 30일 연속 종가 1,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1회 이상의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상장폐지

□ 자본전액잠식 · 공시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강화(제48조 제2항 제1호의2, 제48조 제2항 제4호)

— 최근 반기 말 기준 자본금 전액이 잠식상태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

— 공시의무 위반시 관리종목 지정 없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시의무 위반 실질심사 기준을 누계벌점을 최근 1년간 15점 이상에서 10점이상으로 하향

•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벌점과 관계없이 실질심사

3) 관련 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6/5/13 개정 · 2026/7/1 시행)

— 부칙 제2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12호

— 제53조 제1항 제5호의2, 제54조 제1항 제13호

— 제56조 제1항 제12호 · 제17호의2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2026/5/15 개정 · 2026/5/18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 간 일관성 제고를 위해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을 강화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및 절차 정비 등 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제28조, 제30조, 제30조의2)

— 타 시장과 동일하게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 포함)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

—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 ·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상장폐지를 최대 1년 유예

- 회생·워크아웃 계획 최종 승인
-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에 따른 감사의견 미달일 것(회계부정, 감사증거확보 어려움 등 제외)
- 회생·워크아웃 종료 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 의견서 제출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준 및 절차 정비(제28조, 제29조, 제30조의3)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점을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점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회생절차가 지속될 수 없는 시점으로 변경 등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5/15 개정 · 2026/5/18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 간 일관성 제고를 위해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정비 등 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정비를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관련 절차 정비(제27조, 제27조의2, 제29조)

—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에 대한 상장폐지 유예 제도 관련 감사인 의견서 서식 마련

— 2년 차 감사보고서 제출시에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관련 조항이 적용되도록 정비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준 및 절차 정비(제23조, 제24조, 제25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점 변경 등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등 관련 조문 정비

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6/5/26 개정 · 2026/5/27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경고 지정 및 지정예고 대상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를 제외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경고 지정예고 · 지정 관련 제외 대상 확대 및 조문 정비(제3조의3 제2항 제8호, 제4항 제3호, 제4호)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의 시가총액의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 제외

— 그 밖에 시장상황의 급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및 지정예고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목도 제외

— 기존 초창기 불건전 유형의 투자경고 지정예고 · 지정대상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제외하는 조항은 신설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마.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2026/5/15 개정 · 2026/5/18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정비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정비(별표 2)

— 모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대하여 종합적 심사 진행

- 공시위반행위의 중요성·악의·상습성 여부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 상장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 등

바. 증권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026/5/19 개정 · 2026/5/26 시행)

1) 개정 이유

□ 최근의 시장 변동성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변동성 측정 방식 및 거래증거금률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수가중이동평균법으로 측정한 가격변동성의 충격소멸계수(λ) 변경(별표 1)

— (기존) λ : 충격소멸계수. 이 경우 충격소멸계수는 0.94로 하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정) λ : 충격소멸계수. 이 경우 충격소멸계수는 0.97

□ 지수가중이동평균법으로 측정한 가격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기본거래증거금률 산정 방식으로 변경(별표 3 제1호)

— (기존) '기본거래증거금률'은 산출대상 종목 또는 관련 지수별로 [별표1]에 따라 산출한 가격변동성의 직전 20매매거래일 평균치에 t-분포(자유도 250, 신뢰수준 99.7%)를 적용한 값과 해당 값에 경기순응성 완화비율을 곱한 값을 합산한 값

— (개정) '기본거래증거금률'은 산출대상 종목 또는 관련 지수별로 [별표1]에 따라 산출한 가격변동성에 t-분포(자유도 250, 신뢰수준 99.7%)를 적용한 값과 해당 값에 경기순응성 완화비율을 곱한 값을 합산한 값

사.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26/5/19 개정 · 2026/5/19 시행)

1) 개정 이유

□ 경쟁기업 및 개인을 사전 기피신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평가 절차를 명확화하며 평가기관의 법령 위반 책임 부여 등을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평가 절차 명확화(제5조)

— 전문평가 신청방법과 거래소의 전문평가기관 지정 내용 명확화

— 신청서 접수일을 평가 시작일로 개정하여 평가 시작 전 평가인력 이력사항 제출하도록 함

□ 기술평가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1호)

— 신청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기업 및 개인을 작성하도록 추가

— 전문평가기관과의 이해관계 현황표 작성 시 일정 포함하도록 개정

□ 평가인력 현황표 서식 개정(별지 3호)

— 전공(연구분야), 학위 · 자격증을 전공(최종학위), 연구분야 · 평가분야, 학위, 자격증으로 세분화

□ 평가기관 서약서 서식 개정(별지 4호)

— 서약서 내용 및 법령 위반시 평가기관의 민 · 형사상 책임 내용 추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조사분석자료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 포함)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판매회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에 추가)
다.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 ETN 투자시 기본예탁금 납부 의무화)
라.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6/5/22 개정 · 2026/5/27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ETF · ETN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 제공 관련해서도 개별 지분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함

—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하나로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2026.4.28 시행) 등을 개정

2) 주요 내용

□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ETF(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 ETN(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을 조사분석자료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제2-25조)

— (기존) 조사분석자료 대상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

— (개정) 조사분석자료 대상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을 포함

• '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

□ 조사분석자료 공표 · 제공 관련 조사분석 대상법인 제한 등에 추가(제2-29조)

— (기존) M&A 중개 중인 대상법인의 주식 · 주식관련사채, 주식선물 · 주식옵션,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리포트 공표 · 제공 금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개정) 기존 +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에 대한 리포트 공표 · 제공 금지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에 추가(제2-31조 제2항)

— (기존) 금융투자분석사는 담당 업종의 주식 · 주식관련사채, 신주인수권, 주식선물 · 주식옵션, 주식워런트증권 매매 금지

— (개정) 기존 +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 매매 금지

□ 동일 기초자산 상품에 대한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명문화(제2-31조 제4항)

— (기존)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회사에서 공표한 금투상품에 대해 매매거래 제한 적용

— (개정)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회사에서 공표한 금투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상품(주식 · 주식관련 사채, 신주인수권, 주식선물 · 주식옵션, 주식워런트증권,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에 대해 매매거래 제한 적용

□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대상에 추가(제2-32조)

— (기존) 금융투자분석사 등이 조사분석 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의 주식 · 주식관련 사채,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선물 · 주식옵션,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시 이해관계 고지

— (개정) 기존 +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 보유시 이해관계 고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6/5/22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세제혜택 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펀드를 판매회사 변경 제외 대상에 추가하기 위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신설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규정 마련

- 상품성격, 세금문제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부적합한 펀드는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
- 판매회사별 처리절차 및 시스템 상이, 과세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판매회사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해야하는 문제, 세금 관련 처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어려운 펀드들에 한함

2) 주요 내용

□ 변경대상 제외 펀드(제40-1조)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8)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판매회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에 추가

다.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026/5/21 개정 · 2026/5/2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가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26.1.30.)함에 따라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 ETN 투자시 기본 예탁금 의무화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함

-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 의무화는 KRX규정에 따라 이미 도입(2020.5.)

2) 주요 내용

□ 기본예탁금의 납부(제10조)

— 개인투자자가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 · ETN 투자 시, 협회 규정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2026/5/14 개정 · 2026/5/27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ETF · ETN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개별 지분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ETF · ETN을 법령상 규제(자기 명의 매매, 1사 1계좌를 사용, 분기별 매매명세 신고 등) 적용 상품에 추가(제75조)

— (기존)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호의 상품(지분증권등)에 적용

- 상장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주권 관련 사채권, 파생결합증권, 장내·외파생상품

— (개정) 기존 +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지분증권등)에 적용

- 신설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도 법령상 규제가 적용되나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의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여, 별도 개정 없이 제75조가 적용

□ 표준내부통제기준 고유 규제(사전승인, 매매회전율, 투자한도 등) 적용 상품에 추가(제76조의2)

— (기존)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상장 지분증권)에 적용

— (개정) 기존 +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상장지분증권등)에 적용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